

Brad Pitt 와 약혼녀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잡지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그 사진을 제공한 자로 지목된 잡지사와 사진작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Brad Pitt c/ Voici

파리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제 1 부

1997 년 7 월 25 일 판결

## 사실관계

Magazine Voici 는 1995 년 5 월 7 일자 1 호판 표지면에 “Brad Pitt 와 그의 약혼녀, 가장 화끈한 스트립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10 면과 11 면에서 영화배우인 Pitt 와 그의 약혼녀 Paltrow 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였다.

France Dimanche 지 1995 년 5 월 13-19 일자 “Brad Pitt, 영화 화면상의 섹스 심볼 … 그의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 비록 사진의 숫자는 적었지만 Voici 지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Pitt 와 Paltrow 는 이들 기사와 사진의 게재로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 권리와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1995 년 8 월 21 이 Voici 지의 편집자인 Prisma Presse 사, France Dimanche 지의 편집자인 Edi 7 사, 이들 회사를 위해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SIPA 사, 이들 사진을 연출한 Jason Fraser 사를 상대로 하여 500,000 프랑의 손해배상금과 신민사소송법 제 700 조에 의거한 배상금 30,000 프랑을 공동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더 나아가서 Prisma Presse 사와 Edi 7 사가 문제의 잡지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원 결정을 피고의 비용 부담으로 보도하도록 하고 SIPA 사, Prisma Presse 사, Edi 7 사가 문제의 사진을 재발행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Edi 7 사는 1996 년 1 월 1 일자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Edi 7 사의 주장에 의하면, France Dimanche 지에 게재된 내용은 전적으로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문제의 사진은 특히 프랑스에서 공표되기 이전에 이미 미국언론에 광범위하게 배포된 바 있으며, 문제의 잡지 편집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상호연관성도 없으며, 사진원판은 잡지 편집인이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또한 Prisma Presse 사도 1996 년 1 월 17 일자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주장을 하고있는 바, 문제의 사진은 이미 유럽각국이나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배포된 바 있으며, 특히 원고는 국적이 미국인이고, 또한 Voici 지는 미국에서 배포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SIPA 사도 1996 년 2 월 12 일자로 사진원판의 상업적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1996 년 4 월 10 일자로 Jason Fraser 씨도 자신은 문제된 사진의 저작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Jason Fraser 씨는 청구인이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지목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000 프랑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96년 10월 1일에 낸 답변서에서 외국에서의 사진간행이라고 해서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해서 어떠한 감경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들의 초상이 모욕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해설에서도 저속한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배우로서의 경력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이유

생각컨대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두 개의 출판사 사이에는 아무런 연대관계가 없으므로 그에 따라 야기되는 손해도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의 사진을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야기된 손해와 관련하여 출판대행사나 사진작가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한, 사진게재로 야기된 손해와 관련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 보아야만 한다고 본다.

첫째, Prisma Presse 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oici 지에 게재된 사진은 Pitt와 Paltrow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oici 지에 게재된 10장에 이르는 사진은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초상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바, 민법 제9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문제의 사진은 Prisma Presse 사가 의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사진만을 선택하여 원고의 인격을 무시하는 내용의 해설기사와 함께 게재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 한편 이들 사진이 외국에서 간행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경감될 이유는 없다.

원고들은 이미 프랑스에서도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 사진의 게재로 인하여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기 80,000 프랑의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명한다.

둘째, Edi 7 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ance Dimanche 지에 Voici 지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문제의 사진이 게재된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점을 인정된다. 그러나 게재된 사진의 숫자도 적고 그 크기도 작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기사내용도 그리 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기 40,000 프랑의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명한다.

셋째, SIPA사와 Jason Fraser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 보건대, Gavin de Becker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에게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문제된 사진의 사진작가가 바로 Jason Fraser 씨이며, 그는 SIPA에서 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와 같은 간접증언만 가지고서는, SIPA사와 Jason Fraser씨가 문제의 사진을 현상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하지만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Jason Fraser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의 반소도 또한 기각한다.

넷째, 사진원판의 유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자유에 기본원리에 속한다. '유럽 인권과 기본권 협약' 제 10 조에 의하면, 취재원보호의 원칙은 공익이나 사익이 중대하게 위협받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진원판의 재사용도 별로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취재원보호의 원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다섯째, 기타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에 대한 부수적인 조치로서 판결 주문과 같이 법원의 결정을 공시할 것을 명한다. 민사소송법 제 700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Prisma Presse 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0 프랑을 지불하고 Edi 7 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4,000 프랑을 지불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가집행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판결주문

Prisma Presse 사에 대하여 원고인 Pitt 와 Paltrow 에게 각각 80,000 프랑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하고, 신민사소송법 제 700 조에 의거하여 각각 5,000 프랑의 지불을 명한다.

Edi 7 사에 대하여 원고인 Pitt 와 Paltrow 에게 각각 40,000 프랑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하고, 신민사소송법 제 700 조에 의거하여 각각 4,000 프랑의 지불을 명한다.

SIPA 사와 Jason Fraser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신민사소송법 제 700 조에 의거하여 원고는 공동으로 피고에게 각각 4,000 프랑의 지불을 명한다.

Prisma Presse 사의 비용으로 Voici 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할 것을 명한다.

“파리지방법원 제 1 부는 1997 년 6 월 25 일자 판결에 의하여 Prisma Presse 사가 Pitt 와 Paltrow 에게 1995 년 5 월 1 일자 Voici 지에 게재된 기사내용과 관련된 설명과 사진이 이들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France Dimanche 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할 것을 명한다.

“파리지방법원 제 1 부는 1997 년 6 월 25 일자 판결에 의하여 Edi 7 사가 Pitt 와 Paltrow 에게 1995 년 5 월 19 일자 France Dimanche 지에 게재된 기사내용과 관련된 설명과 사진이 이들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문 공시 기사는 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게재되어야 하며, 그 기사 내용은 높이 2 분의 1 센티미터 활자체로 하고, 1 센티미터 크기의 고딕 활자체로 ‘법원판결공시’라는 제목으로 테두리가 쳐진 박스형태로 기사를 게재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판결해설

1. 영국 왕세자빈인 다이애나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파파라치(paparazzis)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파리지방법원이 1997년 6월 25일에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이 사건은 소위 '대중지'라고 볼 수 있는 이들 두 개의 잡지에서 사생활침해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시각에서만 본다면 이 사건은 사생활침해에 관한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의 사진작가로 추정되는 자와 그가 일하는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의 원판 뿐만 아니라 문제의 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도 사진의 유통을 금지하는 청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특징적인 측면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파리지방법원은 '유럽 인권과 기본권 보호 협약' 제 10 조에 의거하여 언론의 취재원보호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은 1996년 5월 27일 스트라스부르그 유럽연합 재판소에서 내린 바 있는 Goodwin 판결(Légipresse n° 132-III, p. 70, note E. Derieux; Gaz. Pal. 11, 12 juillet 1997, p. 26, note P. de Fonbressin)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2. 취재원보호와 일반적으로 기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직업적 비밀의 문제는 오래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고전적인 논점의 하나이다. 이에 관한 일반론적인 분석에 관해서는 프랑스에서 대체로 E. Derieux의 "언론인의 직업적 비밀 : Le secret professionnel des journalistes"(Légipresse n° 57- I , p. 81), J. Francillon의 "언론인의 직업적 비밀 : Le secret professionnel des journalistes" (Mélanges Laruier, PUF, 1993, p. 127), Me H. Lerclec의 "언론인의 보호와 취재원의 비밀 : Défense du journaliste et secret des sources"(La liberté de la presse et droits de la personne, Dalloz, 1997)와 같은 문헌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취재원보호는 이미 1918년 '언론인 의무헌장'에서 "언론인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직업상의 비밀을 지킨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은 구형법 제 378조, 신형법 제 226-13조에서 적시하고 있는 참된 직업상 비밀을 방패로 삼는 것이 실제로는 제대로 허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비밀스런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경우에, 언론인이란 그 직업적 특성상 이러한 이야기를 입수한 후에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바이다. 생각컨대 언론 취재원의 비밀은 직업상 비밀과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첫째, 언론인의 의무보다는 언론인의 권리가 더 문제된다. 왜냐하면, 언론인이라는 지위는 의식적으로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언론인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언론인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언론인의 정보확보 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일련의 결과를 야기하는 바, 특히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취재원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인의 의무의 일부를 면제시켜 주게 된다. 그러나 반면에 법원이 언론인의 취재원보호라는 이유로 해서 언론인의 직업상 비밀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언론인의 취재원비밀의 보호는 특정한 법조문에 기초하여 당연히 자동적으로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업상 비밀과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 유럽에서 몇 가지 진전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1993년 1월

14 일 법률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모든 언론인은 그의 언론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 그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

이 원칙은 그 이후 형사소송법 제 109 조에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모든 문제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기자로서는 증언과 관련하여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단지 절차상의 권리를 갖는데 불과하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입법자는 민·형사상 언론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취재원비닉권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제 109 조의 규정도 결국은 취재원비닉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4. 유럽연합에 설치된 기구상의 논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얼버무리는 수준의 것이다. 1994 년 6 월 18 일 의정서(JOCE du 14 juin 1994, n° C 44/34)에서, 유럽의회는 매우 구체적인 조건하에서 “언론인의 정보원비밀”의 원리를 천명한바 있다. 정보원비닉권은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표현의 기본권과 연계된다는 점을 적시한 다음에, 유럽의회는 언론인의 취재원비밀의 보호는 민주주의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유럽연합 구성원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비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록 이 의정서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매우 의미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 국가에서 제기된 취재원비닉에 관한 원칙은 미국에서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마침내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유럽연합 재판소는 위와 같은 유럽연합 구성국가 사이에 합의되어 온 취재원비닉권에 관한 일련의 진전된 논의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1996 년 5 월 27 일 스트라스부르그 유럽연합 재판소에서 내린 바 있는 Goodwin / Royaume-Uni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언론의 취재원보호는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 만약 법원이 우월적인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정당화될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문 39), 언론의 취재원을 밝힐 것을 강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유럽 인권과 기본권 보호 협약’ 제 10 조에 반하는 것이다. 바로 이 판결을 통하여 언론인의 취재원비닉권은 이제 실정법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파리지방법원의 1997 년 5 월 25 일 판결은 스트라스부르그 유럽연합 재판소에서 확인된 바 있는 취재원비닉권을 인정하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재원비밀의 보호는 언론자유의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바로 ‘유럽 인권과 기본권 보호 협약’ 제 10 조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법원은 소송절차상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사진원판의 배포금지청구를 기각하였다. 여기서 취재원 비밀보호 원칙의 선언과 일반적인 증거법 즉 신민사소송법상의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프랑스 소송법상의 기본원칙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 제 10 조는 “각자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책무는 신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2 항에서 각자가 견지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부여된 권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사항은 신민사소송법 제 138 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7. 그러나 이와 같이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책무에 관해서는 결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이익은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또 다른 정당한 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신민사소송법 제 11 조에 의하면 소송의 제 3 자는 ‘정당한 장애’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것을 곧 법관으로 하여금 직업상 비밀에 따라서 취재원보호로 연결되게 할 수 있는 매우 넓은 판단범위를 남기게 된다. 게다가 제 3 자로서의 언론인은 증언을 할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109 조에 의거하여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형사법정에서 인정되는 이러한 권리가 민사법정에서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엄격히 실정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2 항이 증거제출의무를 차단하기 위한 방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오직 제 3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것이 당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사자로서는 민법 제 10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 직업상 비밀과 같은 ‘정당한 동기’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결국 취재원보호의 원칙은 제 3 자로서 언론인의 경우에는 ‘정당한 장애’로서, 당사자로서 언론인의 경우에는 ‘정당한 동기’로서 작동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취재원에 관한 사항의 생산 및 배포의 이행청구에 반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실정법상 인정된 새로운 비밀은 민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동기라는 개념은 여전히 불확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재원보호의 원칙은 여전히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다.

8. 하지만 언론인에게 인정된 이와 같은 취재원비밀에 관한 권리가 잘못 이해되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보호는 절대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도 이 취재원보호에 관한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만약 공익이나 사익에 치명적인 위해를 받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리지방법원 판결은 Goodwin 판결을 비껴가고 있다. 실제로 Goodwin 사건에서 스트라스부르그 유럽연합 재판소에서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위원회나 Goodwin 자신도 취재원비밀은 “공익이나 사익에 치명적인 위해를 갖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가 아닌 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동 재판소는 법관이 취재원보호의 원칙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월한 공익적 필요성”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9. 이와 같이 파리지방법원의 판결과 유럽재판소 판결 사이에 나타난 판결이유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의문을 야기시킨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공익과 사익에 중대한 위해”이나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여러 가지 상이한 평석이 가능하다. 진실을 발견하려는 법원의 이익이란 다른 아닌 언론인이 갖고 있는 정보원을 밝혀 내는 것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경우에는 결국 취재원보호의 원칙은 인용되기 어렵다. 반면에 취재원보호를 그 원래의 의미대로 허용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도 취재원보호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공익이란 개념은 매우 현학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을 안전하게 해 주는 전망적인 결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없다는 점이다. 파리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취재원보호에

관한 원칙은 비록 진전된 개념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취재원보호의 원칙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0. 마찬가지로 언론인이 갖는 비밀스러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취재원'이라는 개념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문제되고 있는 취재원이라는 것은 모든 취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원래의 의미에서의 언론인의 취재원이라는 엄격한 의미와는 거리가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정보활동과 관련된 비밀에 대한 권리로서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것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지칭하는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인의 활동과 관련된 엄격한 범주로서의 취재원이라는 개념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11.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상 언론인의 취재원보호에 관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에 관련된 절차는 절대적인 진실의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다. 그것은 언론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진실과 반대되는 문제에 대한 방어권으로써 나타날 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기 이전에 언어나 이미지를 우선 판단하게 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언론인의 취재원보호는 소송의 고유한 의미를 파괴하지 아니하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언론인에게 취재원비밀권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많은 없기 때문에 특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흔히 취재원보호로 인하여 소송상 거증책임이 전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승소할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취재원보호는 피해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언론인이 문제의 증언이나 서류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진술함으로써 취재원을 배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책하기를 선호하는 경우에 법관은 결국 언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Christophe Bigot 변호사의 평석 참조). (출처 :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LÉGIPRESSE n° 146-III (통권 146 호) 1997, 140-145 면.)